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41

발의연월일: 2025. 4. 8.

발 의 자:윤준병·신영대·이원택

이성윤 • 조계원 • 박희승

김교흥 · 김한규 · 민병덕

강준현 · 김태년 · 박민규

김우영 · 김태선 · 허종식

문대림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첨단의료복합단지 내의 관련 기관간의 상호 연계와 협력도 중요하지만, 산업단지, 경제자유구역, 연구개발특구, 산업기술단지 등 국가경 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정·운영 중인 다른 단지·특구 등과의 연계·협력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또한,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시 해당 입지의 규모, 특성,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조성·육성 방식 또는 집약적 조성·육성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고,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하도록 함

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다른 단지·특구 등의 연계·협력을 촉진하도록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,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시 해당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조성·육성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,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2,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5조의2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령을 적용한다.

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과 첨단의료복합단지(제5조제1항에 따른 단지등을 포함한다) 간의 연계·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.

이 경우 입지 선정은 그 규모, 특성, 지역 등을 고려하여 넓은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·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·육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입지 선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

조제1항 후단에 따라 좁은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·육성하는 방식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입지 선정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1조의2(부지등의 처분 제한) 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부지 및 시설물(분양받은 자로부터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,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지 및 시설물을 포함하며, 이하 "부지등"이라 한다)을 처분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부지등을 양도하여야 한다.
 - ②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부지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부지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

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- 1.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: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. 부지의 취득가격
 - 나.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(「한국은행법」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)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 - 다.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
- 2.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: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지등을 양도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31 조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지등의 처분 방법·절차,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·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1조의3(경매 등에 의한 부지등의 취득) 경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부지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1조에 따른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31조의4(부지등의 양도명령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입 주 승인(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입주

승인이 취소된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6개월에서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소유한 부지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부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.
- 제31조의5(이행강제금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,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,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,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,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.
 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의4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.
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의4에 따른 양도명령을 받은 자가 양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,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제34조제1호 중 "제31조제1항"을 "제31조제1항(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(제31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)을 위반하여 부지등을 양도한 자

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6조(과태료) ①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지등을 양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①・	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리를
	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
	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
	다. 다만, 다른 법령을 적용하
	는 것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
	성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령
	을 적용한다.
<u> <신 설></u>	제3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	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
	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과
	첨단의료복합단지(제5조제1항
	에 따른 단지등을 포함한다)
	<u>간의 연계·협력을 촉진하기</u>
	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
	행하고,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
	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제5조(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	제5조(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
선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	선정 등) ①
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	
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구역(이하	

"단지등"이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. <<u>후단 신설></u>

- 1. ~ 8. (생략)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입지 선 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~ 5. (생략)
- 6.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등 첨 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·육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• ④ (생 략)

<신 설>

<u>이 경우 입지 선정</u>
은 그 규모, 특성, 지역 등을
고려하여 넓은 지역에 대규모
로 조성・육성하는 방식 또는
좁은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
·육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
· 中 8 9 L 8 7 二 工 包 1 从
다.
<u>다.</u>
<u>다.</u> 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다.</u> 1. ~ 8. (현행과 같음) ②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

제5조의2(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입지 선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좁 은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· 육성하는 방식으로 첨단의료복 <신 설>

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 요건을 달리정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입지 선정 요 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1조의2(부지등의 처분 제한)
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
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또는 사용 승인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부지 및 시설물(분양받은 자로부터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,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지 및 시설물을 포함하며, 이하 "부지등"이라 한다)을 처분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

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의 료연구개발기관에 부지등을 양 도하여야 한다.

- ②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 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부지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부지등의 양 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- 1.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: 다음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가. 부지의 취득가격
 - 나.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 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 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(「한국은행법」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)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 - 다.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

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비용

2.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 도가격: 「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지등을 양도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지등의 처분 방법·절차,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·취득일 등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1조의3(경매 등에 의한 부지 등의 취득) 경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부지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1조에 따른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1조의4(부지등의 양도명령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입주 승인(제31조의2 및 제 31조의3에 따라 입주 승인을

<u><신</u>설>

<신 설>

<신 설>

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이 취소된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6개월에서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소유한 부지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부지등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2제3 항을 준용한다.

제31조의5(이행강제금)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 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 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,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 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 로 부과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

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.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,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, 이행강 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,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 다.
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의 4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 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의 4에 따른 양도명령을 받은 자가 양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,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

- 제3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 - 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 주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 고 입주 승인 사항을 변경한 자
 - 2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	<u>체납처분의</u>	<u> 님</u>	예에	따	라_	징-	<u> 연한</u>
	<u>다.</u>						
제	34조(벌칙)) –					

- 1.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 1. 제31조제1항(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에 따라 입주 승인 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 하다)-----
 - 2. (현행과 같음)
 - 3.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(제 31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부지등 을 양도한 자
 - 제36조(과태료) ① 제31조의2제2 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부지등을 양도한 자에 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 · 징수 한다.